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 : 송옥주・박 정・최인호

김영주 • 한정애 • 우원식

김경협 • 박용진 • 남인순

박홍근 • 이원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 등유해가스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 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 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제31조의2 신설, 제65조 및 제66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 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화재예방조치 등) ①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화재예방 및 사 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모니터링 시스템 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 등 모니터링 정보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종류,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1호 중 "제39조의2"를 "제32조의2제1항, 제39조의2"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9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
	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다)
<u>4.·5.</u> (생 략)	<u>5.•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⑩ ~ ⑰ (생 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1조의2(폐기물 재활용처리시
	설의 화재예방조치 등) ① 폐
	<u>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u>
	<u>자(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u>
	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한
	다)는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영상정보처
	리기기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1. ~ 20. (생 략)
- 21. <u>제39조의2</u>,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 27. (생략)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 등 모니	
터링 정보는 마지막으로 기록	
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u>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종류,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u>령으로 정한다.</u>	
제65조(벌칙)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32조의2제1항, 제39조의2	
22. ~ 27.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ı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 16. (생 략) <u><신 설></u>

<u>17.</u> ~ <u>19.</u>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9항제5호에
9의2. ~ 16. (현행과 같음)
17.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u>18.</u> ~ <u>20.</u> (현행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